

2018 사무년도(18년 7월 ~ 19년 6월) 일본세관 기업심사 결과

-신고누락 과세가격이 3년 만에 1,500억¥ 초과-

일본 재무성은 2019년 11월 6일 2018 사무년도 (18년 7월 ~ 19년 6월)에 전국세관에서 실시한 기업심사 결과 추정한 관세 및 내국소비세 현황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총괄

총 4,079개 수입업체에 대하여 기업심사를 하였으며, 기업심사결과 신고누락 등으로 세액이 추정된 수입업체는 총 3,231개 업체였다.

신고누락 등과 관련된 과세가격은 약 1,549억 6천만¥이며, 관세 등 추정세액은 약 143억 5천만¥, 추정세액 중 증가산 세액¹⁾은 약 4천만¥이었다.

추정세액이 많았던 품목은 1) 전기기기(85류), 2) 광학기기 등(90류), 3) 자동차 등(87류), 4) 기계류(84류)이며, 5) 유기 화학품(29류) 등이며, 상기품목이 전체 추정세액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한 신고누락 사례로는 1)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작성한 저가 Invoice를 의한 수입신고, 2) Invoice에 기재된 결제금액 이외의 화물대금 신고누락, 3) EPA 특혜세율 적용 착오 등이다.

(표1) 기업심사 결과

구분	2018 사무년도		2017 사무년도 ²⁾
		전년 대비	
기업심사 수입업체 ^①	4,079개 업체	95.6%	4,266개 업체
신고누락 수입업체 ^②	3,231개 업체	96.0%	3,365개 업체
신고누락 비율(②/①)	79.2%	0.3p 증가	78.9%
신고누락 과세가격	1,549억 5,745만¥	104.4%	1,483억 7,430만¥
추정세액	관세	12억2,257만¥	18억 7,418만¥
	내국소비세	124억6,906만¥	116억 7,548만¥
	계	143억5,012만¥	141억 5,320만¥
	가산세	6억5,849만¥	6억 354만¥
	증가산세	4,353만¥	7,139만¥

1) 重加算税는 은폐 또는 가장하여 납세신고 하지 않고 또는 잘못 납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대세(무신고의 경우 40%, 과소신고의 경우 35%)이다. 무신고가산세(15%)와 과소신고가산세(10%) 보다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2) 2017년 7월 ~ 2018년 6월까지를 의미한다.

(표2) 추정세액이 많은 상위 5개 품목

구분 순위	2018 사무년도			2017 사무년도		
	분류	품목	추징세액	분류	품목	추징세액
1	85류	전기기기	33억 6,536만¥	85류	전기기기	24억 9,397만¥
2	90류	광학기기 등	21억 278만¥	90류	광학기기 등	21억 9,995만¥
3	87류	자동차 등	14억 4,140만¥	87류	자동차 등	13억 2,173만¥
4	84류	기계류	11억 5,164만¥	30류	의료용품	10억 899만¥
5	29류	유기 화학품	8억 8,238만¥	84류	기계류	9억 5,847만¥

2. 주요한 추정사례

1) 사례 1: 수입자 스스로 작성한 저가 Invoice에 의한 수입신고

수입자 A는 홍콩 수출자로부터 金具를 수입하고 있었다. A는 수입신고 전에 정규 가격을 알고 있었으나 정규 가격이 기재된 Invoice를 근거로 스스로 정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Invoice를 작성함으로써 과세가격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해서 낮은 가격이 기재된 Invoice에 기초해서 수입 신고하였다.

그 결과 신고누락 과세가격이 7,605만¥, 추정세액은 826만¥(이중 증가산세는 202만¥)이었다.

2) 사례 2: 수출자에게 작성시킨 저가 Invoice에 의한 수입신고

수입자 B는 중국 수출자로부터 구두를 수입하고 있었다. B는 수입신고 전에 정규 가격을 알고 있었으나 수출자와 공모해서 수출자에게 정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Invoice를 작성시킴으로써 과세가격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해서 낮은 가격이 기재된 Invoice에 기초해서 수입 신고하였다.

그 결과 신고누락 과세가격이 2,218만¥, 추정세액은 486만¥(이중 증가산세는 124만¥)이었다.

3) 사례 3: 저가인 것을 알면서 시정 하지 않고 수입신고

수입자 C는 중국 수출자로부터 의류를 수입하고 있었다. C는 수입신고 전에 정규 가격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출자로부터 송부된 Invoice에 기재된 가격이 정규 가격보다 낮은 것을 알면서도 시정 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과세가격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해서 낮은 가격이 기재된 Invoice에 기초해서 수입 신고하였다.

그 결과 신고누락 과세가격이 5,175만¥, 추정세액은 876만¥(이중 증가산세는 94만¥)이었다.

4) 사례 4: 수입자가 지급한 가격조정금(Invoice 가격 이외의 화물대금) 신고누락
수입자 D는 X국 수출자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고 있었다. D는 수출자와
계약에 근거하여 과거 수입한 화물에 대하여 소급해서 가격을 정정하여 증액된
금액을 가격조정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본래 가격조정금은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지만 D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고누락 과세가격이 104억 2,225만¥, 추정세액은 9억 5,021만¥이었다.

5) 사례 5: 수입화물과 관련된 조립비용 신고누락

수입자 E는 한국 수출자로부터 화장품 용기를 수입하고 있었다. E는 수출자에게
수입화물 조립비용을 Invoice 가격과 별도로 지급하고 있었다. 본래 그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지만 E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 신고하였다.

그 결과 신고누락 과세가격이 14억 2,123만¥, 추정세액은 1억 9,071만¥이었다.

6) 사례 6: EPA 특혜세율 적용 착오

수입자 F는 라오스 수출자로부터 일본 아세안 EPA에 근거한 EPA 특혜세율을
적용해서 섬유제품을 수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섬유제품은 제3국으로부터 조달한
옷감을 사용해서 생산되고 있어 일본 아세안 EPA 상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PA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WTO 협정세율
등을 적용하게 되어있었다.

그 결과 신고누락을 포함해서 추정세액은 1,679만¥이었다.

기업심사과정에서 악질의 수입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가 개시되며, 그 결과
관세 등 탈세 사건으로 고발되는 사례도 있다.